
학부모회 규정



장훈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2025.03.01. 시행)

생활복지부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장훈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장훈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단, 이사는 1~7명을 임명 할 수 있다.)
- ②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다만, 당해 학년도 1학년은 예

외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성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총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제10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의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에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학년별 학부모회 회장), 감사, 학급별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1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의에 위임한 사항

제14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회장은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회장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5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 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재정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